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칙

[시행 2021.10.01.] [2021.09.11. 부분개정]

제1장 총칙	2
제2장 전체학생총회	3
제3장 학생총투표	4
제4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	5
제5장 확대운영위원회	6
제6장 중앙운영위원회	8
제7장 연석회의	
제1절 개관	9
제2절 연석전체학생총회	9
제3절 연석학생대표자회의	10
제4절 연석중앙운영위원회	11
제8장 총학생회장단	12
제9장 비상대책위원회	14
제10장 중앙집행위원회	15
제11장 단과대 및 학부 학생회	16
제12장 특별기구	16
제13장 재정	18
제14장 선거	19
제15장 회칙개정	
제1절 양 캠퍼스 공동 회칙개정	21
제2절 인문사회과학캠퍼스 회칙개정	21
부칙	22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교수, 교직원, 동문과 더불어 대학의 4주체로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생회 자치활동과 건학이념인 수(修), 기(己), 치(治), 인(人), 교시인 인(仁), 의(義), 예(禮), 지(知)를 바탕으로 진보적인 학문탐구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설치)

본회는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내에 둔다.

제4조 (회원)

- ① 입학·편입학 등으로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학부 과정 소속이 된 자를 본회의 회원으로 한다.
- ② 졸업·자퇴·퇴학 등으로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학부 과정 소속이 아니게 된 자는 그 즉시 회원 자격을 잃으며, 정학 등의 사유로 등교가 정지된 자는 그동안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단,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 ③ 본회의 정회원은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재학생 전원으로 한다.
- ④ 휴학 또는 수료 상태에 있는 자는 해당 기간 중 준회원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본회의 정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 자체를 부인하는 행위나 본회 및 기타 정당한 학생활동에 대한 침해에 대해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 ③ 본회의 정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 ④ 본회의 정회원은 회칙에 근거하여 학생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 ⑤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 모든 회의에 참가할 권리, 본회의 운영 및 집행 전반에 관하여 보고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⑥ 본회의 정회원은 학문 사상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확보하기 위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및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⑦ 본회의 정회원은 자유로운 정치활동의 권리를 가진다.
- ⑧ 준회원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제반사항의 의무와 권리를 정회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받는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본회 산하 의결기구에 제출될 서면 발의권
 3. 본회 산하 의결기구 의결권

4. 학생회비 납부의 의무

-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직선제로 선출된 학생대표자가 휴학 또는 수료 상태에 있는 경우 전항 제1호 및 제4호를 제외한 제반사항의 의무와 권리를 정회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 받는다.

제6조 (본회의 구성)

본회는 목적 달성과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전체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각 단과대 및 학부 학생회, 각 과 학생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제7조 (학교운영참여)

본회는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적 운영을 위해 학교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1.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중요사항
2. 학생권익과 밀접한 사항
3. 본교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진행
4. 기타 본회의 목적과 관련한 사항

제8조 (자문위원회)

본회는 활동에 있어 필요한 경우 회원들의 요구에 의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장 전체학생총회

제9조 (지위)

전체학생총회(이하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0조 (구성)

총회는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 (의장)

- ① 의장은 총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총회를 주재한다.
- ② 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총학생회장이 결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총학생회장단 모두가 결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 중 호선된 1인이 임시 의장이 된다.

제12조 (소집)

- ① 총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의원 1/3 이상, 또는 본회 정회원 1/10 이상의 발의가 있을 시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총회는 10일 이전에 소집을 공고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업무 및 권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안 심의 및 의결
2. 연석전체학생총회 안건의 상정, 심의 및 조정
3. 기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상정한 안건 및 본회 회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제14조 (개회)

총회는 본회 정회원 1/4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15조 (의결)

- ①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제14조에 의거하여 총회의 개회 또는 의결이 불가할 경우, 그 안건 처리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위임한다. 단, 제13조제1호는 제외한다.

제3장 학생총투표

제16조 (지위)

학생총투표를 통한 의결은 총회의 의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7조 (투표권)

학생총투표의 투표권은 본회의 정회원에게만 있다.

제18조 (시행 및 공고)

- ① 학생총투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한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의원 1/3 이상의 서면 발의
 2. 본회 정회원 1/10 이상의 서면 발의
- ② 학생총투표는 발의 후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학생총투표는 보통, 직접, 평등, 비밀투표의 원칙에 의한다.
- ④ 학생총투표관리위원장은 학생총투표 시행 10일 이전에 다음 각 호를 명시하여 학생총투표 실시를 공고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투표 5일 이전에 학생총투표 실시를 공고할 수 있다.
 1. 안건명
 2. 안건 설명
 3. 본조 제1항에 기한 시행 근거
 4. 시행 일시
 5. 투표소 설치 장소

제18조의2 (학생총투표관리위원회)

- ① 학생총투표관리위원회(이하 “총투관위”)는 투표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 ② 총투관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1.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운영위원 중 최소 3인
 2. 중앙운영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학부 및 과 학생회장단 중 최소 1인
- ③ 학생총투표관리위원장은 학생총투표관리위원 중 1인으로 호선한다.
- ④ 총투관위는 투표일 20일 이전에 구성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안건인 경우, 발의 후 즉시 구성할 수 있다.
- ⑤ 총투관위는 투표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하며 필요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⑥ 총투관위는 연석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명시된 투표관
- 리위원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을 모집할 수 있다.

제19조 (의결)

학생총투표는 정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학생총투표가 부결될 경우 부결된 안건과 동일한 안건은 당해 학기에 안건으로 재상정하지 못한다.

제20조 (준용)

기타 학생총투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석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제4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21조 (지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는 총회의 위임기구이며, 동시에 본회의 심의, 의결 및 감사기구이다.

제22조 (대의원 구성)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학대회 대의원의 자격을 갖는다.
1. 총학생회장단
 2. 각 단과대 및 학부 학생회장단
 3. 각 과 학생회장단
 4. 각 과 학년(반)별 대표
 5.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장단
 6. 특별기구 중 계열기구장단
- ② 본조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단위는 대의원을 최대 두 명으로 제한한다.

- ③ 본조 제1항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단위는 대의원을 최대 한 명으로 제한한다.

제23조 (의장)

- ① 의장은 전학대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 ② 전학대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총학생회장이 결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총학생회장단 모두가 결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 중 호선된 1인이 임시 의장이 된다.

제24조 (소집)

- ① 전학대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 ②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 1회로 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회의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 또는 확대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 ④ 전학대회의 소집은 10일 이전에 공고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소집할 수 있다.
- ⑤ 전학대회의 개최가 불가할 경우 의장이 재량에 따라 10일 이내에 재소집하고, 재소집이 불가할 경우 전학대회 안건은 확대운영위원회에 위임된다. 단, 제25조제4호는 제외된다.

제25조 (업무 및 권한)

전학대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본회 회칙개정안의 심의, 발의 및 의결
2. 총회의 소집 요구
3. 총회 안건의 심의 및 조정
4. 총학생회장단 탄핵안 발의
5. 본회 각 집행국장의 출석 요구
6. 본회 각 집행국장의 인준 및 해임 의결
7. 본회 사업의 검토, 조정 감사 및 의결
8. 본회 예·결산안 심의, 조정 및 의결
9. 학생회비 심의 및 조정, 감사 및 의결
10. 기타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및 전학대회 대의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제26조 (개회)

전학대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27조 (의결)

전학대회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전학대회 의결권은 대의원 1인당 1표를 가지되, 단위 당 최대 2표로 제한한다.

제5장 확대운영위원회

제28조 (지위)

확대운영위원회는 전학대회의 위임기구이자 총학생회 운영기구이다.

제29조 (구성)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확대운영위원의 자격을 갖는다.
 1. 총학생회장단
 2. 각 단과대 및 학부 학생회장단
 3. 각 과 학생회장단
 4.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장단
- ② 각 단위의 확대운영위원은 최대 두 명으로 제한한다.

제30조 (의장)

- ① 의장은 확대운영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 ② 확대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총학생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총학생회장단 모두가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 중 호선된 1인이 임시 의장이 된다.

제31조 (소집)

- ① 확대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 ②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 1회로 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 확대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 ④ 확대운영위원회의 소집은 7일 이전에 공고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소집할 수 있다.

제32조 (업무 및 권한)

확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본회 회칙개정안의 심의 및 발의
2. 전학대회 안건의 심의 및 조정
3. 입학식, 대동제, 건학 기념제, 선거, 학위수여식 등의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의결
4. 본회 예·결산안 심의 및 조정
5. 본회 중앙집행위원회 국장의 출석 요구
6. 전학대회 소집 요구

제33조 (개회)

확대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34조 (의결)

확대운영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확대운영위원회 의결권은 위원 1인당 1표를 가지되, 단위 당 최대 2표로 제한한다.

제6장 중앙운영위원회

제35조 (지위)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상설 의결기구이자 운영기구이다.

제36조 (구성)

-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직선으로 선출된 총학생회장단과 단과대 및 학부 학생회장단,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장단으로 구성한다.
- ② 중앙집행위원회 국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사업 보고 및 제안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 ③ 필요에 따라 본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참석시킬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제37조 (의장)

- ① 의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 ②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총학생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총학생회장단 모두가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 중 호선된 1인이 임시 의장이 된다.

제38조 (소집)

- ① 정기 중앙운영위원회는 매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기중이 아니거나 기타 특수한 상황에서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 ② 임시 중앙운영위원회는 의장 또는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소집한다.

제39조 (업무 및 권한)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본회 제반 사업의 심의 및 조정
2. 본회 예·결산안의 심의 및 조정
3. 중앙집행위원회 국장의 업무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심의
4. 확대운영위원회 안건의 심의 및 조정
5. 연석중앙운영위원회 안건의 상정, 심의 및 조정
6. 본회 회칙개정안의 심의
7. 본회 특별기구 중 임시기구 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심의 및 조정
8. 그 밖의 본회 제반 업무 수행

제40조 (개회)

중앙운영위원회는 재적 단위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단,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각각 하나의 단위로 인정한다.

제41조 (의결)

중앙운영위원회는 출석 단위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중앙운영위원회 의결권은 각 단위 당 1표를 인정한다.

제7장 연석회의

제1절 개관

제42조 (목적 및 구성)

- ① 연석회의는 인문사회과학캠퍼스와 자연과학캠퍼스로 나뉘어 있는 이원화 캠퍼스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 전반에 관한 중요 사항의 결정과 공동의 사업을 펼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② 연석회의는 연석전체학생총회, 연석학생대표자회의, 연석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제43조 (기타)

그 외의 사항은 각 캠퍼스에 관한 조항에 준한다.

제2절 연석전체학생총회

제44조 (지위)

연석전체학생총회(이하 “연석총회”)는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와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전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45조 (구성)

연석총회는 전회의 정회원 전원 및 준회원 중 직선제로 선출된 학생대표자로 구성한다.

제46조 (의장)

- ① 의장은 총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총회를 주재한다.
- ② 연석총회의 의장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과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단, 총학생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캠퍼스의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총학생회장단 모두가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각 캠퍼스 중앙운영위원 중 호선된 1인이 임시 의장이 된다.

제47조 (소집)

- ① 연석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 캠퍼스 의장이 소집한다.

1. 연석학생대표자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서면 발의
 2. 전회 정회원 1/10 이상의 서면 발의
 3. 각 캠퍼스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서면 발의
- ② 연석총회는 10일 이전에 소집을 공고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소집할 수 있다.

제48조 (업무 및 권한)

연석총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연석학생대표자회의에서 상정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2. 각 캠퍼스 총회에서 상정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3. 기타 전회 회원에 의해 상정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제49조 (개회)

- ① 연석총회는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정회원의 1/4 이상과 자연과학캠퍼스 정회원의 1/4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연석총회의 개회가 불가할 경우 의장이 재량에 따라 10일 이내에 재소집하고, 재소집이 불가할 경우 연석총회 안건은 연석학생대표자회의에 위임된다.

제50조 (의결)

연석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연석학생대표자회의

제51조 (지위)

연석학생대표자회의(이하 “연학대회”)는 연석총회의 위임기구이자 동시에 전회의 심의, 의결 및 감사 기구이다.

제52조 (대의원 구성)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연학대회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다.
 1. 양 캠퍼스 총학생회장
 2. 양 캠퍼스 단과대 및 학부 학생회장단
 3. 양 캠퍼스 각 과 학생회장단
 4. 양 캠퍼스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장단
- ② 각 단위의 연학대회 대의원은 최대 두 명으로 제한한다.

제53조 (의장)

- ① 의장은 연학대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 ② 연학대회의 의장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과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단, 총학생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캠퍼스의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총학생회장단 모두가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각 캠퍼스 중앙운영위원 중 호선된 1인이

임시 의장이 된다.

제54조 (소집)

- ① 연학대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 캠퍼스 의장이 소집한다.
 1. 연학대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서면발의
 2. 연석중앙운영위원회 재적의원 1/2 이상의 서면발의
- ② 연학대회는 10일 이전에 소집을 공고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소집할 수 있다.

제55조 (업무 및 권한)

연학대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연석중앙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2. 연석총회 안건의 상정, 심의 및 조정

제56조 (개회)

- ① 연학대회는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자연과학캠퍼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연학대회의 개회가 불가할 경우 의장이 재량에 따라 10일 이내에 재소집하고, 재소집이 불가할 경우 연학대회 안건은 연석중앙운영위원회에 위임된다.

제57조 (의결)

연학대회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연학대회 의결권은 대의원 1인당 1표를 가지되, 단위 당 최대 2표로 제한한다.

제4절 연석중앙운영위원회

제58조 (지위)

연석중앙운영위원회(이하 “연석중운”)는 전회의 상설 의결기구이자 운영기구이다.

제59조 (구성)

- ① 연석중운은 직선으로 선출된 양 캠퍼스의 총학생회장단, 단과대 및 학부 학생회장단,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장단으로 구성한다.
- ② 중앙집행위원회 국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사업 보고 및 제안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 ③ 필요에 따라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참석시킬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제60조 (의장)

- ① 의장은 연석중운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 ② 연석중운의 의장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과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단, 총학생회장이 결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에는 해당 캠퍼스의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총학생회장단 모두가 결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각 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 중 호선된 1인이 임시 의장이 된다.

제61조 (소집)

- ① 연석중운은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를 둔다.
- ② 정기 회의는 총학생회장단 임기 시작일로부터 반기에 한 번씩 소집한다.
- ③ 임시 회의는 각 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회의 요구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제62조 (업무 및 권한)

연석중운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양 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전의 심의 및 의결
2. 연학대회 안전의 상정, 심의 및 조정
3. 전회의 동의 또는 합의가 필요한 사안의 심의 및 조정
4. 기타 전회 제반 사업의 심의 및 조정

제63조 (개회)

연석중운은 각 캠퍼스 재적 단위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각각 하나의 단위로 인정한다.

제64조 (의결)

연석중운은 출석 단위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연석중운의 의결권은 각 단위 당 1표를 인정한다.

제8장 총학생회장단

제65조 (구성)

- ① 총학생회장단은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 ② 전회의 총학생회장단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단과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단으로 구성한다.

제66조 (지위)

- ①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전학대회,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등의 의장이 된다.
- ② 총학생회장단은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단과 함께 소속 캠퍼스의 대표로서 지위와 책임을 가진다.
- ③ 총학생회장단은 탄핵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는다. 단, 총학생회장단이 졸업·자퇴·퇴학 등으로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학부과정 소속이 아니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67조 (의무)

총학생회장단은 성균관대학교 전체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 실현함과 아울러 대학의 자치실현과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할 의무를 부여받는다.

제68조 (업무 및 권한)

- ① 총학생회장단은 본회 회원의 자유로운 학술활동과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업무 실행에 있어서 회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② 본회의 대표로서 본회의 제반사항에 대해 중앙운영위원회, 확대운영위원회, 전학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총회, 전학대회,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연석회의,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 ④ 본회 중앙집행위원회의 국장 및 차장을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 ⑤ 본회 중앙집행위원회의 국장, 차장, 국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다.
- ⑥ 총학생회 예산 담당국에서 편성된 예·결산안, 사업계획 등을 중앙운영위원회와 확대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을 거쳐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 ⑦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총학생회장 결위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⑧ 총학생회장단은 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서의 지도, 조절, 통제 등의 일상 업무를 관장한다.
- ⑨ 총학생회장단은 차기 총학생회장단 당선인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업무 전반에 대해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69조 (임기)

- ①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선거 당선 확정 공표일로부터 차기 선거 종료일까지로 한다.
- ② 보궐선거에 의한 당선자의 임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궐선거 당선 확정 공표일로부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0조 (탄핵)

- ① 총학생회장단이 직무 집행에 관련하여 회칙 위반 혹은 범법행위, 학칙 위반 등의 반사회적 행위를 행한 경우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
- ②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전회의 총학생회장단
 2. 총학생회장단
 3. 총학생회장
 4. 부총학생회장
- ③ 총학생회장단 탄핵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전학대회에서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
 1.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
 2. 전학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서면 발의
- ④ 전회의 총학생회장단 탄핵의 경우, 전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에 의해 연학대회에서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
- ⑤ 탄핵안 발의 시, 그 대상자는 탄핵안의 발의 직후부터 총회 혹은 연석총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되거나, 탄핵 투표가 부결되기 전까지 그 업무와 권한이 정지된다.

- ⑥ 총학생회장단 탄핵의 경우, 전학대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된 뒤,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단, 총회를 개최하지 못했을 시, 탄핵안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1. 총회의 개최를 통한 탄핵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
 2. 탄핵안 통과 후 확대운영위원회에서 탄핵투표관리위원회 구성
 3. 본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탄핵 투표 실시
- ⑦ 전회의 총학생회장단 탄핵의 경우, 연학대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된 뒤,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단, 연석총회를 개최하지 못했을 시, 탄핵안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1. 연석총회의 개최를 통한 탄핵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
 2. 탄핵안 통과 후 연학대회에서 탄핵투표관리위원회 구성
 3. 전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탄핵 투표 실시
- ⑧ 탄핵 투표에 의한 기타 사항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준용한다.
- ⑨ 총학생회장단 탄핵 투표는 본회 정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투표가 무산될 시 탄핵 투표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⑩ 전회의 총학생회장단 탄핵 투표는 전회 정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투표가 무산될 시 탄핵 투표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⑪ 탄핵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단 탄핵안 또는 탄핵투표가 부결될 경우, 부결된 탄핵안과 동일한 사유에 따른 탄핵안은 당해 학기에 안건으로 재상정하지 못한다.

제9장 비상대책위원회

제71조 (구성)

-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해당 사항의 공고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구성된다. 단, 제1호의 경우 전임 총학생회장단의 임기가 끝나지 않았을 때에는 전임 총학생회장단의 임기가 종료된 후 구성한다.
1.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었을 때
 2. 총학생회장단이 결위되었을 때
 3. 총학생회장단이 탄핵되었을 때
-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로 구성한다.

제72조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 ①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제71조제1항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구성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단, 11월 선거가 무산된 경우에는 해당 학기의 동아리연합회, 모든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구성한다.
1.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사유
 2.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원
 3.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절차 및 일정

- ②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 전원으로 구성한다. 단, 11월 선거 무산에 의한 구성은 차기 연도 중앙운영위원 전원으로 한다.
- ③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 중 호선된 1인으로 한다. 다만, 11월 선거무산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해당 연도 중앙운영위원 중 호선된 1인이 차기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의 직을 수행한다.
- ④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후보를 선정하여야 하며 2차 회의에서 다음에 의한 간선투표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또는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투표를 진행하는 경우, 최다득표자가 위원장, 차득표자가 부위원장이 된다.
- ⑤ 제1, 2차 회의의 소집·진행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의장이 한다.
- ⑥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또는 부위원장 선출 즉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고하고 24시간 이후에 해소한다.
1.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또는 부위원장 선출과정(후보자 정보·투표방식·투표결과)
 2.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또는 부위원장 선출결과(선출자 정보)
 3.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해소 공지

제73조 (업무 및 권한)

-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의 결위 기간 동안 중앙운영위원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 ③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④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의 결위 기간 동안 중앙집행위원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 ⑤ 임시중앙집행위원회는 각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단위별 집행부 중 최대 1인씩 추천하여 구성하며, 전학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74조 (비상대책위원장)

- ①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비상대책위원장은 전학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75조 (비상대책위원장의 업무 및 권한)

비상대책위원회장은 총회, 전학대회,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연석회의를 소집하고,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76조 (기타)

기타 비상대책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에 관한 조항에 준한다.

제10장 중앙집행위원회

제77조 (지위)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78조 (구성)

-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국서를 둘 수 있다.
-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각 국서의 국장, 차장, 국원으로 한다.
- ③ 중앙집행위원회의 국장 및 차장은 총학생회장단이 구성하여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제79조 (업무 및 권한)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전학대회 및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업무의 집행
2. 확대운영위원회 및 전학대회에 본회의 운영계획, 예·결산안의 제출
3. 본회의 집행 전반

제11장 단과대 및 학부 학생회

제80조 (지위)

단과대 및 학부 학생회는 각 단과대 및 학부의 최고 학생자치기구이다.

제81조 (구성)

단과대 및 학부 학생회는 각 단과대 및 학부의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82조 (단과대 및 학부 학생회장단)

- ① 각 단과대 및 학부 학생회장단은 각 단과대 및 학부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선출한다. 단, 각 단과대 및 학부 학생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총학생회칙에 준하여 따른다.
- ② 각 단과대 및 학부 학생회장단은 각 단과대 및 학부 학생회를 대표하여 본회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제12장 특별기구

제83조 (특별기구의 성립 요건)

본회는 회원들의 원활한 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성립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때 회칙에 의거한 절차를 거쳐서 그 산하에 특별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에 걸맞은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본회 회원 중 특정 위치에 준하여 그 이해와 요구를 자치활동으로 수렴, 발현할 필요가 있을 때
2. 본회 회원 중 전문적인 영역을 가지고 자치활동을 꾸준히 수행하여 그들의 정체성이 확보되어 있을 때
3. 본회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하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재원 마련과 수익금의 사용이 학생회비의 내역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
4. 본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조직이 필요할 때
5. 본회의 관련 분야 중앙집행위원회 국서가 없거나 존재하고 있는 중앙집행위원회 국서의 활동으로서 회원 전체 또는 특정 회원의 자치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때

제84조 (분류, 구성, 위상)

- ① 특별기구는 각 기구 구성원의 폭과 각 기구장의 선출방식, 각 기구 활동의 특성에 따라 독립기구, 부속기구, 임시기구, 계열기구로 구성된다.
- ②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라 함은 제83조제1호, 제2호, 제5호와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것의 성립요건을 그 주된 특성으로 하는 특별기구를 일컫는 것으로 현재의 동아리연합회를 포함한다.
- ③ 특별기구 중 부속기구라 함은 제83조제1호, 제3호, 제5호의 성립요건을 그 주된 특성으로 하는 특별기구를 일컫는 것이다.
- ④ 특별기구 중 임시기구라 함은 제83조제4호, 제5호의 성립요건을 가지는 것으로 하며 그 역할이 다하면 해제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 ⑤ 특별기구 중 계열기구라 함은 제83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의 성립요건을 그 주된 특성으로 하되 각 과나 본회 기층조직에 기반을 두는 학회나 소모임의 연합 등을 일컫는 것이다.

제85조 (절차)

- ① 본회 산하의 특별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본조 제2항, 제3항, 제4항의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단, 임시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제39조제7호를 따른다.
- ② 본회 산하의 특별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1. 본회 정회원 중 1/10 이상의 서명
 2. 집행국 구성원 명부
 3. 소개서
 4. 전년도 활동보고서
 5. 사업계획서
 6. 서약서
- ③ 본회 산하의 특별기구가 양 캠퍼스에 공동으로 설치되기 위해서는 전회 정회원 1/10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 ④ 본회 산하의 특별기구로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정기 전학대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출석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 ⑤ 정기 전학대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인준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후 1년간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한다.
- ⑥ 본회 산하의 특별기구 간 전환을 하는 경우, 본조 제2항, 제3항, 제4항을 따른다. 단, 독립기구 또는 계열기구에서 부속기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임시 또는 정기 전학대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출석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인준을 받을 수 있다.

제86조 (재정)

- ①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만이 본회의 학생회비에서 그 기구가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 ② 이 외의 특별기구들은 필요에 따라 사업 기획서와 예산서를 첨부해서 재정을 신청하고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학생회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87조 (특별기구장단의 선출)

- ① 특별기구장단은 원칙적으로 각 특별기구의 회칙에 의거하여 선출한다. 단, 특별기구장단의 선출이 불가능할 때는 독립기구장단을 제외하고 총학생회장이 추천하여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 ② 특별기구 중 임시기구장단은 총학생회장이 추천하여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88조 (특별기구장단의 지위)

- ① 특별기구 중에 독립기구장단은 본회 중앙운영위원의 자격을 지닌다.
- ② 특별기구 중에 계열기구장단은 본회 전학대회 대의원의 자격을 지닌다.
- ③ 이 외의 특별기구장은 본회 중앙집행위원회 국장과 동일한 자격을 지닌다.

제13장 재정

제89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학생회비와 학교 보조금, 사업별 회비,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90조 (학생회비)

- ① 학생회비는 매 학기 등록금과 함께 납부하며 중앙운영위원회, 확대운영위원회에서 배정하여 전학대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 ② 전학대회에서는 총학생회비의 인상·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총학생회비의 조정에 관하여 논의할 수 있다.

제91조 (회계연도)

-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총학생회장단의 임기와 동일하다.
- ② 본회의 재원은 매년 1학기 및 2학기로 나누어 집행한다.

제92조 (예산)

- ① 예산은 매 학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항목별로 편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조정하고 전학대회에서 의결한다.
- ② 확정된 예산안은 전학대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3조 (결산)

- ① 매 학기마다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산을 하여 중앙운영위원회,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조정하고 전학대회에서 의결한다.
- ② 최종 결산은 전학대회 의결 후 15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결산서에는 구체적인 항목이 명시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결산의 방식은 「재정운용세칙」을 따른다.
- ④ 중앙집행위원회는 2학기 정기 전학대회 이후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결산을 하여 대자보 형식으로 임기 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4조 (거부권)

- ① 전학대회에서 의결한 예산서에 이의가 있을 시 예산안 공고 후 10일 이내에 이의서를 첨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재심의 요구가 있을 시 3일 이내에 예·결산안을 검토, 수정하여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 ③ 전학대회에서 이를 15일 이내에 심의하여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95조 (예산관리 및 인출)

- ① 예산은 학교당국에 예치하고 모든 인출 사항은 각 단위 대표자가 관리한다.
- ② 학생회비 인출 거부 및 삭감, 동결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학대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불가하다.

제96조 (감사위원회)

-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기구 중 임시기구의 지위를 가진다.
- ② 예·결산안 내역에 이상이 있음이 밝혀지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일주일 이내에 감사위원회를 발족시킨다.
- ③ 감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2명과 확대운영위원 중 중앙운영위원을 제외한 2명, 각 단위의 집행위원을 제외한 일반학우 2명으로 구성한다.
- ④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한다.
- ⑤ 감사위원회는 총학생회, 단과대 및 학부 학생회, 특별기구에 대해 예결산자료와 증명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총학생회, 단과대 및 학부 학생회, 특별기구 대표는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확대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감사 활동 결과를 발족 후 2주 이내에 감사 활동 결과를 대자보 형식으로 학우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⑦ 감사 결과에 대한 문책은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7조 (세칙)

기타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재정운용세칙」을 따른다.

제14장 선거

제98조 (선거 원칙)

본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의 원칙에 의한다.

제99조 (선거 시기)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매년 11월 말에 실시한다. 부득이한 경우 세부 일정은 연석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0조 (입후보자)

- ① 총학생회장단 입후보자는 본회 정회원으로 5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 ② 총학생회장단 입후보자는 캠퍼스별 2인으로 하여 인문사회과학캠퍼스와 자연과학캠퍼스 4인 1조로 선거운동본부를 구성해야 한다.

제101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선거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 ② 중선관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1.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운영위원 중 최소 3인
 2. 중앙운영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학부 및 과 학생회장단 중 최소 1인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 중 1인으로 호선한다.
- ④ 중선관위는 투표일 50일 이전에 구성한다.
- ⑤ 중선관위는 선거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102조 (선거운동)

본회의 회원은 모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확대운영위원과 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03조 (당선)

선거인 재적수의 과반수 투표의 유효투표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일 후보의 경우 유효득표의 과반수 득표자로 한다.

제104조 (당선무효)

- ① 1, 2위 득표자의 득표차이가 유효득표의 오차표수를 넘지 않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
- ② 오차율이 유효투표수의 3%가 넘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

제105조 (재투표)

- ① 제104조제1항의 경우 해당 선본 간 재투표를 1주일 이내에 실시한다.
- ② 제104조제2항의 경우 1주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106조 (선거무효)

- ① 전체 투표율이 50%가 안 될 경우에는 선거를 무효화한다.
- ② 선거 시행 전반에 걸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중선관위는 연학대회를 소집할 수 있고 연학대회의 판단에 의해 선거 자체를 무효 처리할 수 있다.

제107조 (재선거)

선거 자체가 무효 처리될 경우 입후보 절차부터 재선거를 실시하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중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제108조 (보궐선거)

- ① 양 캠퍼스 총학생회장단 모두가 궐위되었을 때,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잔여임기가 당해 2학기 종강일로부터 140일 이내일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회에 관한 조항에 준한다.
- ② 보궐선거에 대한 사항은 연석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09조 (선거시행세칙)

기타 선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연석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의한다.

제15장 회칙개정

제1절 양 캠퍼스 공동 회칙개정

제110조 (공동 발의)

본회 회칙 중 ‘총칙’, ‘연석회의’, ‘총학생회장단’, ‘비상대책위원회’, ‘선거’, ‘회칙개정 제1절 양 캠퍼스 공동 회칙개정’에 대한 회칙개정 발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된다.

1.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정회원 1/10 이상과 자연과학캠퍼스 정회원 1/10 이상의 서면 발의
2. 연학대회 대의원 중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대의원 과반수와 자연과학캠퍼스 대의원 과반수의 서면 발의
3.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중앙운영위원 2/3 이상과 자연과학캠퍼스 중앙운영위원 2/3 이상의 서면 발의

제111조 (연석회칙개정소위원회)

- ① 연석회칙개정소위원회(이하 “연석회개소위”)는 회칙개정안을 만들기 위한 전회의 임시기구이다.
- ② 공동 발의를 통한 연석회개소위는 회칙개정 발의 즉시,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다.

- ③ 공동 발의를 통한 연석회개소위는 회칙개정안을 각 캠퍼스 전학대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2조 (의결)

- ① 공동 발의를 통한 회칙개정의 의결은 연석중운을 거쳐 각 캠퍼스 전학대회에서 의결한다.
- ② 공동 발의를 통한 회칙개정의 의결은 각 캠퍼스 전학대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3조 (공포)

총학생회장은 개정된 회칙을 회칙개정안 가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제2절 인문사회과학캠퍼스 회칙개정

제114조 (발의)

본회 회칙개정 발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된다.

1.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서면 발의
2. 전학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서면 발의
3. 학대운영위원 과반수의 서면 발의

제115조 (회칙개정소위원회)

- ① 회칙개정소위원회(이하 “회개소위”)는 회칙개정안을 만들기 위한 본회의 임시기구이다.
- ② 회개소위는 회칙개정 발의 직후, 학대운영위원 중에서 구성한다.
- ③ 회개소위는 회칙개정안을 전학대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6조 (의결)

- ① 회칙개정안의 의결은 중앙운영위원회와 학대운영위원회의를 거쳐 전학대회에서 의결한다.
- ② 회칙개정안의 의결은 전학대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7조 (공포)

총학생회장은 개정된 회칙을 회칙개정안 가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공포한 날 3일 이후에 시행한다.

제2조 (유권해석)

이 회칙의 유권해석은 전학대회에 있다.

제3조 (관례의 준용)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4조 (독립성의 보장)

이 회칙은 각 캠퍼스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제5조 (효력의 제한)

총학생회장단의 임기 변경을 위한 회칙개정은 그 회칙개정 가결 당시의 총학생회장단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